

13.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취득세 면제 여부

【질의요지】

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며 또한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술 및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당원이 수도권내에 사옥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당원의 업무 내용】

- 1) 당원은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('91.12.31 법률 제4482호) 제15조의2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며 또한 비영리 법인임.
- 2) 당원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승강기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고(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7-152호), 건설교통부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의 검사대행기관으로(건설교통부, 교평91117-486, '96.7.1) 지정되었으며, 노동부로부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율(서울지방노동청, 고안이68500-977, '99.3.12) 받았으며, '95년부터 승강기분야 국제표준화 업무추진간사기관으로 지정(공업진흥청 '95.6.24)되었고 '97부터는 승강기부품표준화 개발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음. 또한 당원은 진단, 감정, 감리 등의 기술용역과 표준보수료 산정, 사고유형조사분석 및 안전성 평가등의 학술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음.
- 3) 당원의 기술용역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는 엔지니어링활동으로 규정하였고(과학기술부, 엔진 71330-228, '98.10.1) 재정경제부도 엔지니어링기술용역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(재정경제부, 소비46015-276, '99.7.28)가 있음.

【당원의 견해】

- 1) 지방세법 제290조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, 당원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주